

124

ACT

2006년 2월 2일 개정

**Act No. 309/2007 Coll, Act No. 140/2008 Coll.에 의하여 개정된
산업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법률**

슬로바키아 공화국 의회는 다음의 법률을 채택한다.

TITLE I

PART ONE

총칙

Article 1

목적

이 법은 사고예방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산업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산업 재해와 직업병 그리고 그 밖의 직장으로부터의 건강의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조건을 규정한다.

Article 2

적용 범위

- (1) 이 법은 모든 분야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2) 직업 활동의 성질에 따라 산업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의무와 조치는 다음에도 적용한다.

- a) 교정시설, 청소년 범죄자 교정시설, 복역 중인 자에게 작업을 부여하는 법인과 작업을 부여받은 복역 중인 자
- b) 사용자 아닌 개인 사업자¹⁾ 또는 그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척 관계인 자가 그의 사업 활동의 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c) 자발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발기인과 그 발기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 d) 사용자의 승인으로 다른 작업장에 근무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자

(3) 이 법의 적용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서비스업 관계의 특정한 활동 수행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정한 활동의 수행의 경우 사용자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4) 이 법은 전쟁 중, 전쟁, 긴급, 위기 상황 선포 후에 직업 군인 또는 특별한 공공사업²⁾의 집행을 위하여 선발된 국민의 활동 수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직업 군인과 특별한 공공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선발된 국민이 군사훈련이나 경찰임무³⁾,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영토 밖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이 법은 특별한 규정⁴⁾에 의하여 슬로바키아 공화국 영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활동 수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한다.

Article 3

용어의 정의

이 법의 적용에 있어,

1) 상법 Article 2, paragraph 2.
 2) 강제적인 군 사업에 관한 Act No. 570/2005. Coll. Article 2, letter c)와 Article 15.
 3) 슬로바키아 공화국 군대에 관한 Act No. 321/2002 Coll. Article 12.
 4) 경찰에 관한 Act No. 490/2001 Coll. 슬로바키아 의회 법 Act No. 171/1993 Coll. Article 77a, 77b.

- a) 사용자는 다음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노동법 관계⁵⁾ 또는 유사 노동법관계⁶⁾로 자연인을 고용하는 자 또는 법인
 2. 직업학교, 직업 훈련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에게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자 또는 법인
- b)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법 관계 또는 유사 노동법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 또는 보수를 받는 자
 2. 직업학교와 직업훈련학교의 학생, 직업수업에 참여한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
- c) 특수집단은 임신부, 출산 후 9개월까지의 모, 수유하는 모, 소년과 장애인이다.
- d) 사고예방책은 업무로 인하여 산업 재해, 직업병, 그 밖의 보건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과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용자의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계획되고 취해진 조치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대책이다.
- e) 위험이란 작업 과정과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특정의 요인이나 상태이다.
- f) 해악이란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해악이 제거될 수 없는 상태이다.
- g) 위험도란 근로자의 보건에 대한 손해 발생의 가능성과 신체손해발생 가능성의 정도이다.
- h)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최신의 과학과 기술 수준으로는 제거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위험이다.
- i) 피할 수 없는 해악은 최신의 과학과 기술 수준으로는 제거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해악이다.
- j) 위험한 사건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태롭지만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이다.

5) 노동법.

6) 예를 들어 경찰관, 첩보기관요원, 교정시설요원, 철도경찰요원의 공공 사업에 관한 Act No. 73/1998. 관세 공무원의 공공 사업에 관한 Act No. 312/2001. 소방과 구조에 관한 Act No 315/2001. 슬로바키아 군대의 직업 군인의 공공 사업에 관한 Act. No 346/2005.

- k) 기술적 장비의 안전이란 기술적 장비의 상태와 그것의 사용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기술적 장비의 안전은 산업의 안전과 건강보호⁷⁾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l) 개인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란 건강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점 또는 질병을 남기는 것이다.
1. 신체 불구
 2. 업무능력의 상당한 감소 또는 상실
 3. 수족의 마비
 4. 감각기관의 기능의 상당한 약화 또는 상실
 5. 주요 장기의 손상
 6. 추상
 7. 유산이나 사산의 유발
 8. 심각한 고통

Article 4

생산 전 단계에서의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1) 설계자, 기계 설계자, 업무 절차의 창안자는 반드시 작업계획과, 기계 또는 기술적 장비의 설계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용을 위해 설계한 작업 절차를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과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 기계와 기술적 장비의 설계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용을 위한 작업 절차는 그것들의 작동과 사용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해악에 대한 평가 및 그것들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도, 위험과 해악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제1항에서의 설계, 기계과 기술적 장비의 설계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용을 위한 작업 절차는 그것들의 보관, 첨부(설치), 사용, 조작, 유지와 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7) 노동법 Article 146, paragraph 2.

Article 5

사고예방의 일반 원칙

(1)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때, 사용자는 보장에 관한 정보와 작업 및 장비의 구성과 훈련을 포함한 사고예방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사고예방의 일반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발생된 위험과 위험도의 배제
- b) 특히 작업 장비와 재료, 물질 그리고 작업 절차의 사용과 선택에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위험도의 평가
- c) 위험이 발생한 장소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
- d) 개인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선택적인 보호 조치의 경우 우선권 부여
- e) 건강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어떠한 활동의 안전, 내지 감소된 위험으로의 대체
- f)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적 능력 향상에 맞춘 업무
- g)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조로운 작업,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유해한 원인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장을 설계하고 작업 장비, 절차, 제조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 인간의 능력, 성격 그리고 가능성의 고려
- h) 안전한 작업 장비, 기술 그리고 작업 구성 방법의 소개, 또는 작업 환경의 요인으로 생각되는 작업 조건의 개선이나 사회적 조치의 이행을 통한 사고예방정책의 계획과 이행
- i)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지침의 공개

PART TWO

사용자의 의무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Article 6

사용자의 일반 의무

- (1)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작업과 관계있는 환경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법적 규율 및 다른 규제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한다.
 - b) 현재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환경 변화와 과학과 기술의 지식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 조건을 개선하고 그것을 근로자에 맞춘다.
 - c) 위험과 해악을 감지하고, 위험도를 측정하며,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에서의 위험도를 측정한 서류를 작성한다.
 - d) 작업장, 출입로, 작업 장비, 재료, 작업 절차, 제조 절차, 작업장 정리 그리고 작업 구성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 및 수리를 제공한다.
 - e)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으로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 f) 위험과 해악을 제거하고, 최신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지식에 근거한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위험과 해악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것들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준비한다.
 - g) 과중하고 단조로운 작업을 배제하고, 적절한 작업 장비, 작업절차, 제조 절차 그리고 개선된 작업 구성을 이용하여 건강에 손상을 가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 그리고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배제한다.
 - h) 위험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곳인 경우, 기술과 장비가 잘못 사용된 경우, 다수의 근로자 및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야기하거나 주변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주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최신의 과학과 기술 수준에 기초하여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2.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

고 해당 근로자가 위험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접근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업안전과 건강보호의 보장을 위한 법적 규율과 다른 규제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입증 가능한 통지와 훈련을 받고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i) 안전 작업 절차를 결정한다.
- j)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보호 조치를 결정,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보호 장비를 결정, 제공한다.
- k)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에서 달성될 기초 목표를 포함하는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 개념에 더하여, 그것의 이행을 위한 방법과 장비,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의 이행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한다. 목표는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것은 11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l)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칙과 내부 규정을 발행하고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 m)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작업과 작업장의 목록을 작성한다.
 - 1. 임산부, 출산 후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모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여성에게 금지된 작업과 작업장
 - 2. 임산부, 출산 후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모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여성에게 특별한 위험과 관계된 작업과 작업장
 - 3. 소년 근로자에게 금지된 작업과 작업장
- n) 이 법 또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때로부터 5년 동안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와 관련된 문서, 기록 그리고 정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 o)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용되는 법적 규율과 다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의 건강 상태와 능력, 나이, 적성,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여 작업을 할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용되는 법적 규정과 다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나이, 적성, 입증된 직업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능력의 상태가 작업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 p)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능력의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

- q) 작업의 성질과 작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 수행되는 제26조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보장한다. 이는 작업⁸⁾과 관련된 예방진찰을 포함한다.
- r) 다음의 근로자의 산업 안전과 건강보호의 보장에 대하여 책임진다.
 - 1. 작업장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근로자
 - 2.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하는 근로자
 - 3. 특별한 위험,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과 관련한 특정 집단의 근로자
- s)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⁹⁾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 t) 더 높은 사고 발생확률과 다른 건강 손상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증가된 작업 수행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수 체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작업 절차와 작업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평가와 위험도의 조사에 근거하여 개인의 보호 장비의 목록을 작성한다.
- b)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이유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효율적인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공 기록을 유지한다.
- c) 개인의 보호 장비를 사용가능하고 가동되는 상태로 유지한다. 장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관리를 실천한다.

(3)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의복 또는 신발이 쉽게 낡을 수 있는 또는 매우 더럽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¹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b)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의 음료권을 보장한다. 신체 위생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8) 공공 건강의 보호, 보조 그리고 발전에 관한 Act No. 140/2008 Coll.에 의해 개정된 Act No. 355/2007 Coll. Article 30.

9) 예를 들어 운송에 있어서 작업시간과 휴식 기간에 관한 노동법 Act No. 121/2004 Coll. 및 개정법률.

10)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과 대비를 위한 최소 요건에 관한 슬로바키아 정부 규정 No. 395/2006 Coll.

는 세탁과 청소, 살균 수단을 제공한다.

(4) 사용자, 개인 사업자, 사용자 아닌 개인은 그들의 작업장과 구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가 제7조제6항 a) 내지 c)에 준하는 필요한 안전과 건강보호 정보를 갖도록 하고 그들의 작업장과 구내에 존재하는 지침을 갖도록 한다.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다른 규정에 준하여 개인이 관련된 문서로써 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적 적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사용자는 직업 수행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용자 아닌 개인과 협의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비흡연자와 같이 수행하는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금지의 강제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흡연 금지를 보장한다.¹¹⁾

(6) 산업 안전과 건강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특별한 규정에 준하여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고용과 일시적으로 할당된 근로자의 고용에 관하여 예방 및 보호 사무 (제21조)를 기록하여 알려야 한다.¹²⁾

(7) 사용자는 그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의 작업장과 구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유의할 의무가 있다.

(8)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 분야에서의 사용자의 임무는, 모든 관리 수준의 관리직 근로자에 의하여, 그들 각각의 지위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의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임무는 그들의 작업 의무와 동등하고 불가분적인 구성부분이다.

(9) 개인인 사용자와 법인인 사용자는 제12조제5항과 제22조제8항에 준하여 필수적인 예방조치와 보호 조치의 이행을 보장한다. 그들은 생명과 건강

11) 예를 들어 Act No. 377/2004 Coll. 비흡연자의 보호에 관한 그리고 그 개정법률에 관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의 규정. 폭발성 있는 대기에서의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요건에 관한 Act No. 393/2006 Coll.

12) 노동법 Article 58.

에 대한 어떠한 즉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즉시 행동해야 한다.

(10)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은 사용자가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분야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산업 안전과 건강보호에 관한 보장에 관련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은 근로자가 인수할 수 없다

Article 7

근로자의 통지와 보고

(1)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분명하고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각 근로자에게 다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a) 산업 안전과 건강보호¹³⁾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율과 다른 규정 및 안전한 작업, 작업에서의 건강 보호,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행동, 안전한 작업 절차의 원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근로자의 지식을 검증해야 한다.
- b) 건강상의 위협과 위험과 해악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현존하는 예상 가능한 위협과 해악
- c) 구내 출입과 구내 거주 금지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잠재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발생시키는 활동 수행의 금지

(2) 제6조제1항 m)에 의하여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작업 목록과 작업장을 분명하고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그가 모집한 근로자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다른 작업장으로의 전근,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이나 임무부여, 새로운 기술, 작업절차 또는 장비에 대한 지침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노동법 Article 39.

(4) 작업장과 작업의 수행과 관련된 환경, 특히 작업장비, 작업절차, 새롭거나 변경된 위험과 해악에 대한 공고의 내용과 반복되는 공고의 간격은 반드시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에 적합해야 한다.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법 규정 혹은 다른 규정이 그 단기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반복되는 공고의 간격을 적어도 2년에 1번은 조정해야 한다.

(5) 산업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공고, 실질적으로 단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교육, “근로자 안전 대표자”로 칭하는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 교육은 작업 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사용자는 적절하고 분명하게 근로자와 근로자 안전 대표자¹⁴⁾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자에게 다음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작업 중에 그리고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해악, 위험도 평가의 결과
- b) 근로자와 각자의 작업장에서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에 관련하여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예방 조치 및 보호조치
- c) 응급 조치 방안, 조치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 건강에 손상이 있을 경우 따르는 조치와 절차, 구조 작업과 대피 그리고 화재의 경우 따르는 조치와 절차
- d) 관할 노동 검열관¹⁵⁾과 감독 기관¹⁶⁾에 의해 제안, 명령된 예방 및 보호조치
- e) 산업 사고, 직업병 그리고 다른 부상, 그것들의 원인의 조사 결과, 채택되고 시행되는 조치

(7) 제6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잠

14) 노동법 Article 11a.

15) 노동 조사관 및 불법 작업과 불법 고용에 관하여 Act No 125/2006 Coll.에 의해 개정된 Act No. 82/2005.

16) 광산 활동과 공공 광산 활동 기구에 관한 Act No 51/1988 Coll., Act No 200/1998 Coll. 및 개정법률.

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전문 근로자”라고 칭해지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 근로자는 Article 21에 기초한 계약상의 업무를 포함한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위임받은 자이다.

Article 8

즉각적이고 심각한 생명과 건강에 대한 해악의 경우 사용자의 의무

(1) 즉각적이고 심각한 생명과 건강의 해악이 발생한 경우 산업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의 규모, 작업과 위험의 성질, 그리고 위험도의 크기를 고려하여 사용자는 다음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a) 사전 조치의 이행,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장비의 보장, 응급 조치방안을 위한 필요한 장비의 보장 그리고 다음의 목적을 위한 이행
 - 1. 구조 작업, 대피, 부상, 응급 조치 방안의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문서로 확정할 것
 - 2. 응급 조치를 위한 장비를 포함한 필요한 장비의 작업장 설치
 - 3.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근로자 구조 작업의 수행, 대피, 응급 조치 방안, 소방 훈련 그리고 재훈련의 지도
 - 4. 관할 건강 센터, 구조 센터, 소방서로의 연락의 제공
- b)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와 다른 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의 이행, 근로자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에 따라 해악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조치의 이행
- c) 해악에 노출되거나 잠재적으로 노출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악과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 대한 즉각적 공고
- d) 지침의 즉각적 제공, 근로자가 그들의 일을 중지하고 작업장을 떠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e) 정당화할 수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악이 존재하는 곳에서 근로자들이 계속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근로자가 근로자나 다른 자의 건강과 생명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악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작업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것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Article 9

활동의 관리 감독

(1)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작업과 건강 보호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행동 그리고 안전한 작업 절차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에 관한 법적 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요청해야 한다. 특히 다음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 a) 법률에 규정된 간격으로 작업 환경, 직무 검사, 전문적 조사의 시행, 특정한 기술 장비에 대해 전문적 검사의 요소들을 관리 감독하고 측정과 평가를 보장함으로써 기술적 장비의 안전 상태를 포함하는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상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b) 근로자가 근무시간 동안 알코올, 마약,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내에서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c) 작업장이 정해지지 아니한 근로자 및 작업장에서 홀로 작업하는 근로자의 활동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 d) 개인 보호 장비 및 보호 수단과 다른 보호 조치의 적절한 사용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관리 감독 활동 중에 발견된 결함을 제거해야 한다.

Article 10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동

사용자는 근로자나 근로자 안전 대표자가 안전과 건강 보호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전에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와 근로자 안전 대표자와 함께 토론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나 근로자 안전 대표자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상당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a)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하여 제안된 방침과 그것의 이행과 평가에 관하여 제안된 계획
- b) 작업 장비, 기술, 작업 기구, 작업환경과 작업장에 관하여 제안된 선택
- c) 제8조제1항a)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에 의하여 예방 및 보호 업무와 임무를 이행하는 전문 근로자의 임명에 관한 제안
- d) 계약을 기초를 위임된 경우 예방 및 보호 업무 분야에서의 임무의 이행
- e) 개인 보호 장비, 단체 보호 장비의 방안을 포함한 보호 조치의 위험도 평가, 결정, 및 이행
- f) 사고들의 원인과 제안된 조치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 사고, 위험한 결과, 직업병, 그리고 다른 부상
- g) 예방 및 보호 업무의 수행에 대한 근로자, 근로자 안전 대표자 그리고 임명된 전문 근로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범위
- h) 제7조에 따른 공고와 보고에 관한 계획과 보장, 그리고 근로자 안전 대표자의 양성

Article 11

휴직

(1)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의 휴직은 특정 작업이 악화된 작업 조건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산업 건강 손상 예방 측면에 근거하여 휴직이 최선이라는 조건을 실현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정 작업은 사용자와 산업건강보험의 협의에 의해 고안된 제안에 기초하여 구속력 있는 보고서의 형태로 결정된다. 그 결정은 근로자 안전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공공 건강관리 분야의 관할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적어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4년 동안 특수하게 악화된 작업 환경이나 제한된 지역 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휴직해야 한다. 특정 작업 중 적어도 8주 이상 중단된 바 없이 진행된 수행은 계속적인 수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전리작용이 일어나거나 방사능이 유출되는 특정한 업무를 통제된 장소에서 3년 동안 적어도 600근무단위시간(shift) 이상 작업한 근로자, 혹은 화학적 발암물질 검출이 입증된 작업에서 3년 동안 적어도 400근무단위시간 이상 작업한 근로자는 추가적인 휴직을 해야 한다.

(5) 2년 동안 적어도 275근무단위시간 이상 채광과 터널 및 갱도공사를 포함한 지하에서의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추가적인 휴직을 해야 한다.

(6) 휴직에 있어, 근무단위시간이란 특정한 업무에 있어 적어도 그 근무단위시간의 대부분을 작업한 경우에만 1근무단위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규칙적인 시간동안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한 근무단위시간은 근무단위시간 규정을 충족하며, 불규칙적인 근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규정된 근무단위시간의 환산시간과 일치해야 한다.

(7) 산업 건강 보험의 권고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휴직 개시 시점, 장소 그리고 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적어도 2주이다. 휴직은 주로 유급 휴가와 연결되며 중대한 이유 없이 중단될 수 없다.

(8) 휴직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는 관리된 건강 보호 체계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하고, 체류 휴직인 경우 모든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

(9)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동 수단과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출장에 준하는 다른 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고 여행 경비¹⁷⁾를 제공할 수 있다. 휴직 급여는 제6조제11항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

(10) 근로자의 휴직을 결정하는 사용자는 휴직 중 혹은 휴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책임이 있다. 휴직에 참여한 것은 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휴직 장소로 이동하거나 휴직 장소에서 복귀하는 과정, 항해 또는 비행 중, 휴직 장소에서의 개인적 여가시간은 휴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관리자에 의하여 허가되기는 하였으나 관리자가 계획하지 않은 활동은 휴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rticle 12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사용자와 더불어 근로자의 작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과 건강 보호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상할 권리. 필요한 경우,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토론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 b)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혹은 다른 자의 생명과 건강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아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경우, 작업 수행을 거절하거나 작업장을 떠나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권리

(2)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에 관한 지침, 법적 규정 그리고 다른 규정을 준수할 의무. 안전한 작업, 작업장에서의 건강보호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행동의 원칙에 승낙할 의무. 입증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정식으

17) 여행경비에 관한 Act No. 283/2002 Coll.

로 근로자에게 공고된, 정해진 작업절차에 승낙할 의무

- b)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수단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 안전 대표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그들과 협력할 의무. 관할 노동 검열관과 감독기관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에 협력할 의무
- c) 작업을 수행할 의무. 작업 장비, 재료, 위험한 물질 그리고 다른 수단을 다음과 같이 작동하고 사용할 의무
 - 1. 입증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고된 그것들의 사용을 위한 지침사항에 따라
 - 2. 전문 자격으로서의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
- d) 특정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 증가된 위험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작동과 작업을 부과하였을 경우 작업 장비의 작동 및 활동을 수행할 의무
- e) 안전과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 작동하고 자발적으로 교체할 의무
- f) 계획된 방법에 따라 할당된 개인 보호 장비를 모두 사용할 의무
- g) 구내 입장 및 체류의 금지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독립된 법규로 지정된 행동의 금지에 동의할 의무
- h)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수업과 다른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획득한 지식을 이행할 의무
- i) 직업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¹⁸⁾
- j) 필요한 경우 관리자, 안전 기술자 혹은 공인 안전기사, 근로자 안전 대표자, 관할 노동 검열관, 관할 감독 기관에 산업 안전과 건강에 잠재적으로 위협을 주거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보고할 의무. 그리고 근로자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여 결함을 제거할 의무
- k) 작업시간 중 작업장, 사용자의 구내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서 알코올 음료, 마약, 향정신성 물질의 섭취를 삼가야 할 의무. 그리고 그런 물질의 영향 하에서 작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삼가야 할 의무.
- l) 근로자가 알코올, 마약, 향정신성의 물질의 영향 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청¹⁹⁾이나 사용자가 조직한 검사에 응할 의무. 사용자는 이

18) 공공 건강의 보호, 보조 그리고 발전에 관한 Act No. 140/2008 Coll.에 의한 개정법률 Act No. 353/2007 Coll. Article 30.

검사에 참여할 근로자를 지도할 권한을 부여할 근로자 집단을, 또는 그와 함께 다른 자를 지명해야 한다.

m) 금연 구역에서 금연할 의무

n) 휴직에 참여할 의무

(3) 근로자의 작업 업무의 일부가 알코올 음료 섭취를 필요로 하거나 그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예외적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작업장, 구내, 그 외의 장소에서의 알코올 섭취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개인적 작업 수행의 경우 사용자인 법인, 개인에 적절하게 적용된다. 제2항a)호 내지 m) 혹은 제3항은 사용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5) 관리자의 의무 범위를 초과한 예방조치와 안전 조치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산업 안전과 보호 분야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보고한다.

Article 13

구조물, 작업장 구내, 설비, 작업 절차의 안전

(1)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 절차와 설비의 기술 문서는 각각의 법²⁰⁾에 규정된 요건과 생산, 이동, 조립, 설비, 작동, 사용, 유지, 보수 그리고 제거 작업 중의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요건을 포함한다. 구조물의 기술 문서는 준비, 설치, 복원 그리고 기능 작동과 관련한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을 위해 계획된 요건을 포함한다. 기술 문서는 안전한 사용과 유지 조사와 조작을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2) 구조물과 그 일부, 작업 구내, 설비의 작동 그리고 작업 절차의 적용

19) 예를 들어, Act No. 125/2006 Coll. 에 의한 개정법률 Act No. 51/1988 Coll.

20) 예를 들어, 생산물의 기술 요건 및 승낙의 평가에 관한 Act No. 264/1999, Act No 327/2003에 의한 개정 법률인 기술장비 분야와 승강기와 관련한 평가 절차 확립을 위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내부 규정 No. 571/2001.

중에 근로자는 실제적 조건에 상응하는 미리 정해진 기술문서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작업에서의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을 위하여 계획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구조물과 그 일부, 작업 구내, 설비의 작동 그리고 작업 절차의 적용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설계자, 계획자, 제조자 혹은 생산자에 의해 특정된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구조물과 그 일부, 작업 구내, 설비의 작동 그리고 작업 절차의 적용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것들의 수행과 관련된 기술문서 또는 특정한 규정²¹⁾ 명시된 유지, 조사, 검사, 공식 검사, 전문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구조물과 그 일부, 작업 구내, 설비의 작동 그리고 작업 절차의 적용을 사용할 수 있다.

(4) 특별 규정에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의 관점에서 구조물과 그 일부, 출입로, 작업장, 설비, 작업 절차 그리고 활동을 명시한다.

(5) 사용자는 구조물과 그 일부, 설비의 작동, 작업 절차의 사용에서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인 특별규정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

(6) 사용자는 잠재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손상과 위협을 주는 작업장과 장비에 분명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²²⁾에 따라서 작업에 안전과 건강 표시를 해야한다.

(7) 제1항내지 6항의 규정은 개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주택을 제외하고 공공 건물의 일부, 다세대 주택 시설, 비주거 구역에 적용한다.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협회, 건물에서의 비주거 구역의 협회에 의해 사용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공 건물의 일부, 건물시설의 일부,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의 공유인 비주거 구역와 편의시설, 그리고 비주거 구역의 관리인에 의해 사용자의 임

21)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의 요건에 관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규정 No. 391/2006 Coll. 작업장비의 대책에 관한 안전과 건강의 최소한의 요건에 관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규정 No. 392/2006 Coll.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의 최소한의 요건에 관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규정 No. 396/2006 Coll.

22) 작업에서 안전과 건강 표시를 보장하지 위한 요건에 관한 슬로바키아 규정 No 387/2006.

무를 수행한다.

Article 14

기술 장비에 대한 안전 요건의 이행의 증명

(1) 기술 장비에 대한 안전 요건의 이행의 증명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 규정에 따른 제한된 기술 장비의 수리와 전문 조사의 실행에 관한 사용자의 전문 능력의 증명. 가스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의 연료탱크에의 주입을 포함하는, 가스의 이동을 위한 압력용기에의 주입에 관한 사용자의 전문 능력의 증명. 그러한 활동의 수행을 위한 권한의 발급에 관한 사용자의 능력의 증명.
- b) 조사, 안내, 평가의 수행. 공공 검사 및 제한된 기술 장비의 표시, 관련 문서의 발급을 포함한 산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 규정에 따른 다른 검사.
- c) 개인의 운영 검사의 전문 능력의 증명. 전문 조사와 전문 검사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의 증명. 산업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 규정에 따른 제한된 기술 장비의 작동과 수리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의 증명.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에 관한 증명.
- d) 다음의 검토. 기술장비, 재료, 기술 장비와 그것의 변화를 포함한 과제에 대한 문서의 계획, 작업에서의 안전과 건강의 요건과 관계된 기술과 기술 장비의 문서의 계획, 전문가의 시각에 대한 문서의 발급.

(2) 국립 노동 조사국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가진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르는 기술 장비의 안전 요건에 관한 이행을 검증한다.(이하 “감독기관”이라한다.) 감독기관의 활동은 각각의 규정²³⁾에 의해 규율된 감독 주체가 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법에 규정된 조건의 이행을 증명해 온 국립 조사국은 제1항에 따

23) 철도에 관한 Act No 164/1996 Coll.에 의해 개정된 Act No 51/1988 Coll.

르는 기술 장비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로 된 신청서에 기초하여 감독기관에 증명서를 발급한다. 앞의 신청서는 이름, 등록된 사무실, 그리고 신청자의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문서로 된 신청서는 행정상의 비용을 확정하는 문서를 수반한다. 그 점에서 기관은 다음을 설명한다.

- a) 제1항에 따르는 전문 능력이 증명된 활동은 수행하지 않는다. 기술 장비와 구조물의 계획 과제의 분야에서의 과제, 구조물 그리고 공급 수행은 하지 않는다.
- b) 기관은 제1항에 따르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능력의 개인을 고용한다.
- c) 기관은 제1항에 따르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장비와 기구를 갖는다.
- d) 제1항에 따르는 활동의 수행은 그들의 수행에 관하여 작업절차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비용으로 보장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르는 활동의 수행은 이러한 활동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주의 독립의 원칙, 불평부당의 원칙을 보장하는 양질의 관리체계를 갖는다.
- e) 기관은 다음에 관한 각각의 규정²⁴⁾에 따를 경우 승인된다.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장비의 안전에 관한 요건의 이행을 증명할 경우
- 2. 관계된 당사자와 관계없는 조사주체의 활동 수행(type A)과 생산과 인간 그리고 관리 체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 주체의 활동 실행

(4) 국립 노동 조사국 증명은 감독기관의 이름, 등록된 사무실, 감독 기관의 사업자 번호 그리고 추가 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증명서는 5년을 주기로 발급한다.

(5) 제1항에 따르는 활동에는 대가를 지불한다. 행정상의 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은 이러한 활동에 적용하지 않는다.

(6) 감독 기관은 제1항에 따르는 활동의 전 기간 동안에 걸쳐 제3항 의

24) Act No. 264/1999 Coll.

조건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법 규정 혹은 제1항에 따르는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규정의 의무 위반의 경우 국립 노동 조사국은 기술 장비와 안전 요건의 이행에 관한 증명을 위한 면허를 취소한다.

(7) 국립 노동 조사국은 그들의 이름과 등록된 사무실을 포함한 감독기관의 목록과 취소된 증명서의 목록을 발행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은 공공건물의 일부와 다세대 주택의 시설, 개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집을 제외한 비주거 구역에도 적용한다.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 협회와 건물 내 비주거 구역의 소유자 협회,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비주거 구역과 구내 시설 그리고 비주거 구역을 통하여 사용자의 임무는 수행된다.

Article 15

활동 수행을 위한 권한 부여

(1)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는 전문 조사와 전문 검사 그리고 제한된 기술 장비의 수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는 또 다른 개인과 이러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권한에 기초하여, 또 다른 법인을 위한 가스로 움직이는 원동기 이동수단을 위한 탱크의 충전을 포함하는 가스 수송을 위한 압력 용기의 충전을 수행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는 문서로 된 신청서에 기초하여 감독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제3항에 따라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반하는 신청서는 다음의 자료를 의미한다.

- a) 이름, 성, 생년월일 그리고 개인의 주소
- b) 법인의 경우 명칭, 등록된 사무소, 이미 등록된 경우 사업자 번호 그리고 허가 발급을 신청한 단체의 명칭과 위치
- c) 신청서의 목적인 활동의 유형과 범위

(3) 허가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주어진다.

- a)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16조에 따른 전문적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결정된 노동계약
- b) 기술적인, 개인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활동 수행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과 범위

(4) 감독기관은 이 법과 법령 그리고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다른 규정에 규율된 조건의 수행을 검증하기 위한 허가를 발급한다.

(5) 허가는 5년 동안 유효하다. 허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a) 이름, 감독 기관에 등록된 장소, 허가를 받는 법인의 사무소
- b) 허가의 고유번호
- c) 명칭, 법인의 등록된 사무소 혹은 이름, 성, 허가를 받는 사용자 개인의 주소
- d) 허가가 발급된 활동의 유형과 범위, 필요한 경우 그것의 실행을 위한 특별한 조건
- e) 허가의 발급일, 법인의 대표자의 날인, 이름, 서명과 직위

(6)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상업 등기 등본 혹은 부여받은 허가에 따르는 활동을 반드시 포함하는 영업허가등본을 전술한 허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제출한다.
- b) 허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제3항과 제5항 d)에 규정된 조건을 따른다.

(7) 관할 노동 조사관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를 취소한다.

- a) 심각한 혹은 반복되는 법 규정 그리고 작업에 있어서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분야의 다른 규정에 위반의 경우

- b) 제3항과 제5항 d)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c)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목적을 포함하는 영업허가 혹은 상업 등기 등본이 없는 경우
- d)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8) 허가의 효력은 다음의 경우에 상실된다.

- a) 법인의 상업등기부 폐기
- b) 영업허가의 실효
- c) 허가 발급의 실효
- d) 법인이 관할 노동 조사관의 최소결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

(9) 사용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는 수행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르는 활동을 허가 없이도 수행한다. 전문적인 능력은 제16조에 의해 규정된 문서로써 증명한다.

Article 16

활동수행자격과 활동수행허가

(1) 감독기관 혹은 개인은, 제27조제3항(교육과 훈련을 위한 면허를 가진 개인)에 따른 면허를 가진 법인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활동 수행 면허와 활동수행허가("자격 혹은 허가")에 기초한 경우에만, 이 법 규정과 작업의 안전과 건강의 분야와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해 규정된, 할당받은 작업장비의 작동과 수행을 할 수 있다. 개인이 각각의 규정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신청 문서에 기초하여 면허와 허가가 발급된다.

(2) 개인에게 부여하는 면허와 허가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되는 바, 지원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법적 규정 혹은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규정에 정한 바 없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b) 각각의 법령에 따르는 교육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 c) 각각의 법령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 d) 각각의 법령에 의한 규정된 수준으로 전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e) 전문적 지식을 증명해야 한다.

(3) 면허 또는 허가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이 발급된다. 그리고 다음의 자료를 주 내용으로 한다.

- a) 등록번호에 따르는 개인의 이름과 직위, 혹은 면허와 허가를 발급한 법인
- b) 면허와 허가의 등록번호
- c) 발급된 면허와 허가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규정의 조항
- d) 발급된 면허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활동, 필요한 경우 활동의 범위
- e) 면허와 허가를 발급받은 개인의 이름, 성,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 f) 최종 검사 날짜
- g) 면허와 허가의 발급의 날짜와 장소
- h) 면허와 허가를 발급하는 개인 혹은 법인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

(4) 5년 후 면허나 허가를 가진 자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면허를 가진 자가 실시하는 전문 재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위한 면허를 가진 자는 전문적 재교육에 참여하는 자의 면허와 허가에 기간을 기입해야 한다.

(5) 면허나 허가를 가진 자는 전문적 활동을 함에 있어 법적 규정과 작업에서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관할 노동 검열관은 법 규정 그리고 작업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의 다른 규정을 심각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법인으로부터 면허와 허가를 취소한다. 면허와 허가가 취소된 개인은 최초의 취소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신청할 수 있다. 국립 노동 검열관은 제3항 d)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면허와 허가가 취소된 자의 목록을 공개한다.

(7) 면허와 허가는 제6항에 따른 취소에 의하여 실효된다. 혹은 면허와 허가는 면허와 허가를 가진 자가 전문 재교육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실효된

다.

(8) 제1항 내지 제7항은 개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주택을 제외하고 비주거 구역, 다세대 주택 시설, 건물의 공공부분에 적용한다. 사용자의 임무는 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인 혹은 건물의 시설 관리인 그리고 다세대 주택 소유자와 비주거 구역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비주거 구역와 편의 시설의 관리인에 의해 수행된다.

Article 17

산업사고, 다른 사고, 직업병, 위험한 결과와 심각한 산업사고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음의 사건을 즉시 알려야 한다.

- a) 피해자의 상태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작업에서의 모든 사고 혹은 근로자의 의무 이행 중의 사고(산업사고)²⁵⁾
- b) 산업 사고가 아니거나 산업 사고의 결과가 아닌, 사용자의 작업장이나 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나 사망 사건
- c) 모든 위험한 사건
- d)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산업사고²⁶⁾

(2) 제1항에 따르는 사건의 발생을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전술한 사건의 발생을 입증하는 근로자 혹은 개인에게 적용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르는 사건의 발생의 보고 방법과 보고 대상자를 내부 규정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관할 조사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제5항

a) point 3 내지 point 4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된 작업장소는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경우나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 생명과 건강의 잠재적 위

25) 예를 들어 노동법 및 그 개정 법률 Act No. 73/1998 Coll. 개정 법률 Act No. 200/1998 Coll.

26) 심각한 산업 사고에 관한 개정 법률 Act No. 261/2002 Coll.

협을 방지하는 조치의 실행의 결과 혹은 중요한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으로 생긴 결과로 작업장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결과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 상태에 관한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사용자는 3일 이상의 근무 부적격의 결과를 발생시킨 모든 산업 사고를 기록해야 한다. 사용자는 산업사고(등록된 산업 사고)의 결과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피해자의 상태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피해 근로자와 근로자 안전 대표자의 참여 아래 사고의 원인 및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각한 건강 악화나 최소 42일 이상 근무 불가의 상태에 있는 경우(“심각한 산업 사고”)에는 사용자는 공인 안전기사를 초빙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b) 사용자는 기록된 산업사고의 발생을 보고 받은 때로부터 4일 안에 기록된 산업 사고의 보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 c) 유사한 산업 사고의 반복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승인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5) 보고를 받은 즉시,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발생을 보고한다.

- a) 다음의 사람에게 등록된 산업 사고를 보고한다.
 - 1. 근로자 안전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자
 - 2. 문제의 사실과 대하여 산업 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행이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²⁷⁾
 - 3. 심각한 산업 사고와 관련된 경우 관할 노동 검열관 혹은 관할 감독 기관
- b) 심각한 공업 사고의 직접적인 위협, 심각한 공업 사고의 발생, 직업병 혹은 직업병의 위협을 관할 노동 검열관에게 보고한다.

27) 개정된 법률 Act No. 171/1993 Coll.

(6)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산업 사고를 당한 경우 이 사용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즉시 산업 사고의 발생을 알려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등록된 산업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다른 사용자는

1. 제5항 a)에 따르는 보고의 의무를 수행한다.
2. 제4항 a)에 따르는 기록된 산업 사고의 발생의 원인을 파악한다.
3. 제4항 b)에 따르는 기록된 산업 사고의 보고의 기본 사실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그것을 송부한다.
4. 제4항 c)에 따르는 조치를 승인하고 실행한다.

b) 근로자의 사용자는 제4항 b), c), 제5항 a) 그리고 제7항, 8, 12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한다.

(7) 사용자는 다음을 송부한다.

a) 산업 사고에 대하여 알게 된 때로부터 8일 이내에 기록된 산업 사고의 보고를 다음에 송부한다.

1. 관할 노동 검열관 혹은 관한 감독 기관
2. 근로자가 산업 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등록된 산업 사고를 당한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산업 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등록된 그의 유족.

b) 관할 노동 검열관에게 심각한 산업 사고의 원인과 상황의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심각한 산업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사한 산업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과 승인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 감독 기관에 송부한다.

(8) 사용자는 다음의 기록은 보존한다.

- a) 이후에 다른 산업사고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 명백한 사고로써, 기록된 산업 사고에 대한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산업사고
- b) 부상 발생의 원인 그리고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부상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해 승인되고 이행된 조치를 보여주는, 산업 사고나 위험한 사건 이외의 다른 부상

- c) 질병 발생의 원인 그리고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되고 이행된 조치를 보여주는, 확인된 직업병²⁸⁾ 그리고 직업병의 위협

(9) 위험한 사건, 산업 사고, 다른 사고, 직업병 혹은 직업병의 위협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또한 제4항 a), c) 그리고 제5항 a) point 1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참석한 진찰 혹은 건강검진시설은 제4항 a)에 따른 심각한 산업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사용자, 노동 검열관 그리고 관할 감독 기관에 문서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알려야 한다.

(11)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 보험 회사²⁹⁾, 사회 보험 기구, 의사 혹은 다른 건강 관리 근로자, 기술 안전 업무와 작업 안전 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산업 건강 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산업 사고, 직업병 직업병의 위협, 심각한 공업 사고의 직접적 위협 그리고 심각한 공업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그들이 활동 수행 중 얻은 지식을 관할 노동 검열관 그리고 관할 감독 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12) 사용자는 제4항 b)에 따르는 기록된 산업 사고 보고서를 그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다. 제8항에 따르는 기록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

Article 18

사용자간의 협력

28) 개정된 사회 보험에 관한 Act No. 461/2003 Coll.

29) 개정된 보험 사업에 관한 Act No. 95/2002 Coll.

(1) 여러 사용자들에게 속한 근로자들, 또는 영업허가를 가진 여러 자연인들이 공동 작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경우, 전술하였던 예방 분야의 담당자 및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과 준비 분야의 담당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협력, 활동에 있어서의 의견 조율, 상호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어느 사용자가 그 공동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지는지, 또 어느 범위까지의 의무를 지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2) 공동 작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둔 사용자들은 주로, 가능한 위험요소와 예방조치, 응급치료 수단, 소방, 근로자 구조 및 대피 작전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의무를 진다. 각 사용자들은 이 정보를 자신의 근로자들과 근로자 안전 대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와 자연인(다른 자연인들과 법인들을 위하여 조립, 수선, 건설, 그 밖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은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안과 설비에 관하여 주문자와 합의할 의무가 있다. 작업은 작업장이 완전히 보호되고 설비가 갖추어진 때에만 시작될 수 있다.

(4) 투자자, 사용자 및 자연인(사용자가 아닌 사업주이며 건설 작업의 수행을 제공하는 자)은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의무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립된 계획에 입각하여, 작업 계획 및 실행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장의 제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제4조제1항에 따라 준비된, 기술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설계도와 제14조제1항 d)에 따른 수정안이 사용자 또는 자연인(사용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투자자는 건축허가절차에서 그것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이 사안에 관한 전문적 소견의 부분을 노동 조사국이나 감독 기관에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Article 19

근로자 안전 대표자

(1) 사용자는 노동조합체 혹은 근로자 회의의 추천에 기초하여, 혹은 사용자의 기업 내에 양자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자로서 근로자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안전 대표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 안전 대표자로 지명되거나 선출될 수 있다.

(2) Annex No. 1에 포함된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자격에 따른 규약이 적용되는 사용자에 속한 1인의 근로자 안전 대표자는 최대 50인의 근로자까지 대표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의 경우 1인의 근로자 안전 대표자는, 50인 초과하여 최대 100인의 근로자까지 대표할 수 있다.

(3) 근로자 안전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작업장 감독과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정된 조치의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
- b) 사용자에 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사용자의 기업 내에 설립된 노동조합체, 근로자 회의,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다만 다른 법률³⁰⁾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떠한 비밀정보도 공개되지 않는다.
- c) 사용자와 협력하고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
- d) 사용자로 하여금 이미 인지된 결함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

30) 상법 Article 17.

미 통지받은 결함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노동 조사국, 또는 감독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 e)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와 관련되는 경우 사용자가 주최하는 토론에 참여하거나,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Article 17에 구체화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근로환경의 요소에 대한 측량과 평가, 노동 조사국 혹은 감독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고,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러한 감사, 측량, 평가 및 그에 포함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f) 사용자의 기업에 대한 근로 조사 또는 감독이 수행되는 경우 노동 조사국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4) 사용자의 기업 내에 지명된 근로자 안전 대표자가 없는 경우, 제3조 b) 내지 f)에 규정된 권한은 근로자에 의하여 행사되며, 사용자는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의 충분한 참여를 제공하는 수단을 통하여 이 법에 규정된 상응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 안전 대표자에게 교육과 적당한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6) 사용자는 근로자 안전 대표자 각각의 평상시의 작업장과 그 작업장 내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한 근로자 안전 대표자의 명단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Article 20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

(1) 100인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자문기관으로서, 근로자 안전 대표자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용자 대

표자를 포함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안전 대표자가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회합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상황과, 산업재해, 직업병 및 Article 17에 규정된 사고의 빈도 전개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근로 환경 및 조건을 포함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
- b)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관리와 통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
- c)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연관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
- d) 사용자에게 대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설립은 근로자 안전 대표자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사용자가 근로자 안전 대표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은 근로자들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Article 21

예방 및 보호 사무

(1) 예방 및 보호 사무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전문적 서비스로서, 심리사회적 위험을 포함한 위험의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전문적 직무 선택과 편성 및 수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모

든 근로자를 위하여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자신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그와 유사한 노동관계에 있는 자로서 안전 기술 사무(제22조), 산업 건강 사무(제26조)로 정의된 예방 및 보호 사무의 제공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전문가를 지명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전문 근로자를 통해 예방 및 안전 사무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필요한 기술적, 기계적 설비를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

(3) 법인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근무 조건,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범위와 성격, 구조를 고려한 결과 사용자가 전문가인 근로자를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자연인(기업가) 또는 법인으로서 예방 및 보호 사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방 및 보호 사무 제공의 이행을 할 것을 계약상 합의할 의무가 있다.

(4) 사용자는 예방 및 보호 사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연인(기업가) 혹은 법인이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에서 필요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확립하는 전문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 동안 전문 근로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충분한 시간에 대해 합의할 의무가 있다. 그 충분한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그의 법인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노동 조건과 그에 따른 위험의 범위, 성격, 구조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5) 전문 근로자는 그의 전문적 능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6) 전문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에게 예방 및 보호 사무를 제공하는 자연인(기업가)과 법인은 활동에 있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무국과 산업 건강 사무국이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최소 1년에 1회 이상 합동 감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Annex No. 1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 그리고 19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등록된 사무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19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무국과 산업 건강 사무국이 매 5년 마다 그 사용자의 작업장, 또는 분리된 작업장 대하여 합동 감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7) 안전 기술 사무국과 산업 건강 사무국은 사용자의 적당한 조직 구성원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근로자 안전 대표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 기술 사무국과 산업 건강 사무국의 구성, 또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한 임무의 완료는, 사용자의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의무나 이를 보장할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8) 자연인(기업가) 또는 법인은 오직, 그들로 하여금 안전 기술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노동 조사국에 의해 발급된 면허, 또는 산업 건강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 공화국 공중보건국(공중보건국)에 의해 발급된 면허를 각각 소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로서 안전 기술 사무와 산업 건강 사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면허를 결한 경우, 자연인(기업가)는 그가 안전 기술자이거나 공인 안전기사인 경우에만 안전 기술 사무를 제공할 수 있다.

(9) 국립 노동 조사국 또는 공중 보건국은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의도하는 활동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면 신청서에 의해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 신청서에는 인지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자가 안전 기술 사무와 산업 건강 사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a) 근로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전문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을 것
- b) 개개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한 정선된 작업 처리절차와 그들의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적합한 조직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c) 적합한 작업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d) 적합한 기술적, 기계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e) 전문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의존적 관계에 있지 않을 것

(10) 국립 노동 조사국 또는 공중 보건국은 제9항에 규정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제8항에 의한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면허에는 면허 대상자인 자연인(기업가) 또는 법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면허의 유형과 고유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면허는 5년간 유효하다. 국립 노동 조사국과 공중 보건국은 발급된 면허의 기록을 유지하고 안전 기술 사무 또는 산업 건강 사무 제공 면허자인 법인과 자연인(기업가)의 명단을 그들 각각의 성명, 주소와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11) 안전 기술 사무와 산업 건강 사무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자연인(기업가) 혹은 법인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법적 규제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며 제9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노동 조사 기관이 그들의 안전 기술 사무와 산업 건강 사무 이행여부를 검증하여 공중 보건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다.

(12) 자연인(기업가) 또는 법인이 그들의 전문적 활동에 있어 제9항에 포함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속적으로, 혹은 중대하게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국립 노동 조사국은 안전 기술 사무의 제공 허가를, 공중 보건국은 산업 건강 사무의 제공 허가를 철회하여야 한다.

Article 22

안전 기술 사무국

(1) 안전 기술 사무국은 사용자에게 전문적, 방법론적, 조직적, 통제와 협력, 교육 임무 및 주로 작업시설과 구조의 적절성, 작업 공정, 절차, 장비, 그리고 기술적, 조직적, 개인적 설비의 측면에서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보장과 관련된 다른 의무들에 관한 자문 편의를 제공한다. 안전 기술 사무국은 노동 환경의 완벽화의 관점에서 제26조에 규정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며, 사용자와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련된 관리적 임원 및 근로자의 태도를 감화한다.

(2) 안전 기술 사무국의 임무는 안전 기술자와 공인된 안전기사에 의해 이행되는 바,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과 보호 분야 또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이행된다.

(3) 안전 기술 사무국의 임무는,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라 Annex No. 1에 규정된 사용자 기업의 안전 기술자, 혹은 독립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 안전기사에 의해 이행된다. 안전 기술자는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라 Annex No. 1에 규정된 사용자의 기업에서 공인 안전기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안전 기술 사무국의 임무를 이행할 수 있다.

(4) 1인 또는 수인의 안전 기술자 또는 공인 안전기사를 지명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인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근무 조건, 작업 공정의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범위와 성격,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로 위험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의 보장과 관련된 전문 업무의 조직과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만큼의 안전 기술자가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수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결정할 의무를 지는 안전 기술자 또는 공인 안전기사의 최소 숫자는 Annex No. 1a에 규정되어 있는 바, 1인의 안전 기술자 또는 1인의 공인 안전기사당 근로자 수의 규정은, 안전 기술 사무를 보장하는 계약상의 의무이행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안전 기술자와 공인 안전기사의 임무는 예외적으로 기술적 조사의 수행, 한정된 기술 장비의 기술적 검사를 위해서, 근로자의 생명의 보호나 건강 보호 보장, 화재로 인한 중대한 산업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전문적 활동과 결합될 수 있다.

(6) 자연인인 사용자 또는 법인인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경우, 그의 작업장에서 스스로 안전 기술자 혹은 공인 안전기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a)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Annex No. 1에 규정된 경우로서, 5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 b)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Annex No. 1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19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7) 자연인인 사용자 또는 법인인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작업장에서 안전 기술자 또는 공인 안전기사의 전문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다.

- a)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은 경우
- b)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으로부터 최소 16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우

(8) 사용자의 기업에서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 기술자와 공인 안전 기사는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상급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필수적인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조치의 부과는 안전 기술자 또는 공인 안전기사에 의해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까지 유효하다.

Article 23

안전 기술자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은 안전 기술자가 될 수 있다.

- a) 고등학교의 교육 또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을 수료하고,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전문적 예비과정을 마쳤으며, 교육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적절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안전 기술자의 전문적 자격 면허("안전 기술자 면허")를 취득한 자
- b) 국립 노동 조사국과의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술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학교("학교")에서 최종 시험을 치루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대학교 과정을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고 적절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안전 기술자 면허를 받은 자

(2) 안전 기술자의 전문적 교육과 전문적 예비과정의 최소한의 내용과 범위, 제22조제7항 letter b)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체적인 전문적 예비과정의 내용은 독립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한다.

(3) 시험에 응시하는 자연인은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전문적 지식, 법적인 규제와 다른 규율에 대하여 정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시험 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1인 이상의 공인 안전기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자연인은 불합격한 시험일로부터 최소 1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4) 안전 기술자 면허는, 학교 또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법인에 의해 조직된 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은 발급된 안전 기술자 면허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안전 기술자 면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학교, 또는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의 명칭
- b) 교육과 훈련에 대한 허가 번호
- c) 면허의 고유번호
- d) 안전 기술자 면허 발급의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법률규정
- e) 안전 기술자 면허 발급 대상 자연인의 성명, 출생일, 본적
- f) 전문적 예비과정 기간
- g) 시험일자
- h) 안전 기술자 면허 발급일시와 장소
- i) 시험 위원장의 성명과 서명
- j) 학교 또는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의 관인의 날인, 학교 또는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의 등기된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

(6) 안전 기술자 면허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발급된다. 5년이 지나면 안전 기술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에 의한 전문적 재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적 재훈련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 기술자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7) 안전 기술자는 제5항 letter e)에 규정된 정보에 어떠한 변경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한 학교 또는 법인에게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기술 면허의 원본을 제출하면, 면허를 발급한 학교 또는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은, 갱신된 정보가 표시된 신규 면허를 무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8) 안전 기술 면허가 취소된 안전 기술자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Article 24

공인 안전기사

(1) 공인 안전기사는 제23조에 따른 안전 기술자이며, 안전 기술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의 전문적 경력을 가졌으며 국립 노동 조사국에 의해 지명된 위원회가 주최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를 말한다.

(2) 공인 안전기사는 또한 자연인이며, 성명과 출생일, 본적, 제3항 letter a) 내지 b)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및 주법상의 관계 혹은 고용 관계에서 5년 이상 산업 안전 건강 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여왔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하는 서면 신청에 대하여 국립 노동 조사국이 공인 안전 기사 면허를 발급한 자를 말한다. 공인 안전기사 면허 발급은 전술한 전문적 활동 수행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공인 안전기사 면허 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지원자("지원자")는 국립 노동 조사국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에는 그의 성명, 표제, 출생일, 본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a) 지원자가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b) 안전 기술자 면허

c) 지원자가 전문적 경력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문서

d) 인지

(4) 제1항에 따른 전문적 경력은 사용자가 작성한 전문적 활동 수행의 서면 확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바, 사용자의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경제활동의 직함 및 전문적 경력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급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한 안전 기술자의 전문적 경력은 전문적 활동 수행에 적합한 도급계약을 제시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하고, 각각의 고객이 제공받은 용역의 기간,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라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의 경제활동의 분류코드와 직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시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명된다. 지명된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1인은 공인 안전기사여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전문적인 노동 조사관 경력을 가진 노동 조사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은 서면시험과 구두시험으로 구성된다. 국립 노동 조사국은 지원자에게 시험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시험 과정에서 지원자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상의 규정과 기타 규율에 대한 지식,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안전한 노동과 작업장에서의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관한 지식,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 조건의 범위는 국립 노동 조사국에 의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개된다.

(7) 국립 노동 조사국은 지원자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자에게 공인 안전기사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 안전기사 면허는 기한의 정함 없이 발급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a) 국립 노동 조사국의 명칭과 주소
- b) 공인 안전기사 면허 발급의 근거가 되는 일반 규정
- c) 공인 안전기사 면허의 고유번호
- d) 면허 발급 대상자의 성명, 출생일, 본적
- e) 시험일 (제2항에 따른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 f) 공인 안전기사 면허의 발급일과 발급장소
- g) 시험 위원회 위원장의 성명과 서명 (제2항에 따른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 h) 국립 노동 조사국 대표자의 직인, 성명, 직함, 서명

(8)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는 서면 지원서에 의하여 불합격한 시험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행한 3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9) 공인 안전기사는 공인 안전기사 면허의 발급일로부터 매 5년마다 최소 1회 이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교육과 훈련을 허가받은 법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재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10) 면허가 취소된 공인 안전기사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최소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1) 공인 안전기사가 그의 성명, 본적, 원래의 공인 안전기사 면허와 함께 교부된 문서에 변경이 있음을 국립 노동 조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국립 노동 조사국은 새로운 공인 안전기사 면허를 무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12) 국립 노동 조사국은 발급된 공인 안전기사 면허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립 노동 조사국은 제25조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는 공인 안전기사 기록에서 삭제한다. 공인 안전기사가 제9항에 의한 전문적인 재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공인 안전기사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Article 25

면허의 취소와 활동의 제한

(1) 안전 기술자나 공인 안전기사가 전문적 임무 수행 중에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제나 기타 규율을 중대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노동 조사국은 그 안전 기술자의 안전 기술자 면허를 취소할 의무가 있으며, 국립 노동 조사국은 그 공인 안전기사의 공인 안전기사 면허를 철회할 의무가 있다.

(2) 노동 조사국은 안전 기술자 혹은 공인 안전기사가 작업상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율이나 기타 규제에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반하는 임무 수행 중인 경우, 안전 기술자 혹은 공인 안전기사 개인의 자연인인 사용자 또는 법인인 사용자에 대한 전문적 임무 수행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

Article 26

산업 보건국

(1) 산업 보건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보건 감독을 수행하여 사용자들에게 작업장의 보건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a)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의 탐지 건강 위험요소들의 평가에 협조한다.
- b)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 요소들과 작업 조건들을 평가한다.
- c) 근로자의 작업장 적응을 지원한다.
- d)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상담을 제공한다.
 1. 근무와 휴식의 계획과 구성, 작업장과 근무지의 배치
 2. 잠재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기술과 재료
 3. 건강과 근로상의 생리학, 심리학, 위생학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보호, 개별적, 집단적 보호장비를 포함한 인체공학
- e)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1. 근로자의 보건과 지원 프로그램의 제고, 작업 환경의 증진, 보건적 측면에서 새로운 설비와 기술에 대한 평가
 2. 근로 재활 수단
 3. 근로 부적격, 산업재해, 작업관련 질병과 건강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4.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의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시스템의 조직

f) 근로자의 응급처치 훈련 [제8조제1항 letter a) point 3]

g) 근로상의 건강과 위생학, 생리학, 심리학 및 인체공학에 대한 보호, 긍정적 영향 분야의 정보, 훈련, 교육의 제공에 관한 협력

h) 작업과 관련된 예방 의학

(2) 산업 보건국의 임무는 산업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건강관리 요원으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수행된다.³¹⁾

(3) 제1항a) 내지 d), e) point 1, 혹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작업을 하는 19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경우 g)에 따라,³²⁾

산업 보건국의 임무는 산업 의학, 예방 산업 의학, 독물학(毒物學), 작업장의 건강관리, 공중 건강관리를 전공한 의사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공중 건강관리 또는 공인된 위생학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 기술교육을 전공으로 대학 교육을 수료한 보조인에 의하여, 또는 고용관계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속한, 작업장의 건강 분야를 전공한 역학(疫學) 보조인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4) 근로자로 하여금 첫 번째나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건강관리 제공자³³⁾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 보건국의 임무는, 사용자에게 의해 지명된 1인 또는 수인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직원에 의해, 또는 그가 고용하는 자, 고용관계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 자연인인 건강관리 제공자 개인이 산업 보건국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Article 27

교육과 훈련

(1)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위험 예방 대책의 문제는, 성인교육과 재훈련의 경우는 물론, 학생과 피훈련자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2)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전문적 훈련 프로그램

31) 건강관리 요원의 그 이상의 교육 방법과 특수화 체계 및 인증된 임무 수행 체계에 관하여는 The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No 322/2006 Coll.

32) Article 31 of the Act No 355/2007 Coll.

33) 건강관리 제공자, 건강관리 직원, 건강관리 분야의 전문기관에 관하여는 Article 4 of the Act No 578/2004 Coll. 및 그 개정법률.

이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위험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립 노동 조사국 또는 공인된 감독기관³⁴⁾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Annex No. 2에 구체화된 개별적 활동의 영역에서의 작업 보호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조직하고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경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근무 보호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려는 사용자의 경우, 또는 Annex No. 2의 group 01 point 01.1.의 에 의한 관리직 직원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개별 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근무 보호 분야의 교육 과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 면허("교육훈련 면허")는 서면 신청서에 의하여 발급된다.

(4) 교육훈련 면허의 발급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자연인이며, 모범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훈련을 위한 자재, 기술 장비를 갖추었을 것.
 1. 지원하려는 면허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졌거나, 최소 3년 이상의 전문적 경력이 있거나, 교수 과정(lecturing course) 수료증 소지자이거나, 교육학 준비 수료증(pedagogical preparation certificate) 소지자일 것("교수 자격"), 또는
 2. 지원하려는 교육훈련 면허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지원자가 전문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하려는 면허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하나, 또는 필요한 경우 여럿의 대표자를 보유하고("전문 대표자"), 최소 3년 이상 개별적인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력과 교수 자격을 갖춘 하나 또는 여럿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강사")
- b) 법인의 경우 하나 또는 여럿의 전문 대표자, 또는 지원하려는 교육훈련 면허와 관련된 교육훈련 분야에 전문적 자격을 가진 강사를 보유하고 있고, 모범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훈련을 위한 자재, 기술 장비를 갖추었을 것

(5) 교육훈련 면허 발급을 위하여

- a) 지원한 교육훈련 활동에 전문적 자격을 갖추었음이 적절한 확인서, 증서 또는 다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b) 교수 자격은 공인된 교육기관³⁵⁾에서 발급한 증서 또는 다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34) Act of the Slovak National Council No 51/1988 Coll. 및 그 개정법률.

35) 심화 교육에 관한 Act No 386/1997 Coll. 및 개정법률, 고용에 관한 Act No 387/1996 Coll. 및 그 개정법률인 the Act No 70/1997 Coll.

(6) 전문 대표자는 지원하는 교육훈련 면허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 대표자는 교육훈련 면허 지원자의 근로자이거나 회사의 대리인이거나 법인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7) 자연인에 의한 교육훈련 면허 지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성명, 출생일, 주소
- b) 전문 대표자의 인적사항
- c) 강사의 인적사항
- d) 지원하는 교육훈련 면허와 관련된 활동

(8) 법인에 의한 교육훈련 면허 지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법인명, 등록된 영업소, 법적 형태
- b) 등기된 법인의 인적사항
- c) 전문 대표자의 인적사항
- d) 강사의 인적사항
- e) 지원한 교육훈련 면허와 관련된 활동

(9) 자연인이나 법인의 지원서에는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a) 그들의 전문적 자격 또는 그들의 전문 대표자의 전문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b) 그들이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교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c) 강사의 전문적 자격과 교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d) Annex No. 2에 따라 지원하는 각각의 교육훈련 면허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수립된 모범적인 교육훈련 계획
- e) 교육훈련 과정의 자재 및 기술 제공에 관한 보고서
- f) 전문 대표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의 사본
- g) 지원한 각각의 활동에 대한 인지

(10) 교육훈련 면허 지원자에 의하여 신청된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제출된 모범적인 교육훈련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지원한 교육훈련 면허와 관련된 활동에 따른 교육 및 훈련 활동의 표시
- b) 교육훈련 목표
- c)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 교육의 정도
- d) 교육훈련의 적절한 형식
- e) 이론적, 실무적 교육훈련 구성의 시간 및 교육과정이 명시된 교육 계획
- f) 교육 계획 및 교육과정에 명시된 각각의 과목에 대한 강사 명단
- g) 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최종적 수단

(11) 국립 노동 조사국은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훈련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교육훈련에 대한 면허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a) 자연인의 인적사항
- b) 법인의 상호, 등록된 영업소, 법적 형태
- c) 교육훈련에 대한 면허 발급의 일반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명시
- d) 면허의 고유번호
- e) Annex No. 2에 따른 허가된 활동의 명시
- f) 교육훈련 면허의 발급일자와 만료일자
- g) 국립 노동 조사국장의 서명과 관인의 날인

(13) 교육훈련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제7항 letter a) 내지 c)와 제8항 letter a) 내지 d)의 정보, 교육훈련 면허 발급의 기초가 되는 기간 및 조건,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목의 첨부 서류를 갖추어 국립 노동 조사국에 통지할 것.
 1.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사본, 또는 발급된 교육훈련 면허에 따른 활동의 과목을 나타내는 상업 등록 등기부의 사본을 제출할 것. 다만 교육훈련 면허 지원서에 첨부한 경우가 아닌 때에만 그러하다.
 2. 제7항 letter a) 내지 d)와 제8항 letter a) 내지 d)에 따른 정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훈련 면허 발급의 기초가 된 조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상응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그 정보를 제출할 것.

- b) 교육훈련을 통하여 제4항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시킬 것.
- c) Annex No. 2, group 01의 내용이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인 근로자 또는 관리직 근로자 집단의 근무의 성격에 적용되는 바, 이에 따른 근로자 및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각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때 계획의 사본이 상응하는 사용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d) 교육훈련 활동에 관한 기록부를 개설하고 유지할 것.
- e) 승인된 모범적인 교육훈련 계획에 등재된 강사 또는 letter a) point 2에 따라 등록된 강사를 통하여서만 교육훈련을 수행할 것.
- f) 참여자가 지식에 대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경우 수료증, 인증서, 또는 기타 문서를 발급할 것.
- g) 발급한 수료증 또는 인증서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유지할 것.

(14) 국립 노동 조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훈련 면허를 철회하여야 한다.

- a) 교육훈련 수행의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 b) 교육훈련 과정에서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법적 규율과 기타 규제에 대하여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c) 자연인으로서 교육훈련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1. 부수적인 수료증이나 인증서가 취소되어 더 이상 전문적 자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 전문적 준비의 갱신에 실패한 경우
- d) 교육훈련을 허가 받은 자가 전문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15) 교육훈련 면허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효된다.

- a) 면허의 만료
- b) 교육훈련을 허가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또는 파산신청자의 자산 불충분으로 파산신청이 거부된 경우
- c) 교육훈련을 허가 받은 자연인의 사망 또는 사망선고

(16) 국립 노동 조사국은 교육훈련 면허의 발급과 철회 명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공개한다.

Article 28

심사위원회

(1) 독립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a) 다음 서류의 발급 신청에 대한 평가
 1. 제21조에 따라 안전 기술 사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증서
 2. 제24조에 따른 공인 안전기사 면허
 3. 제27조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 b) 제15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증서와 제16조에 따른 증서나 허가에 대한, 신청에 의한 발급 거부 심사

(2)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여 제1항 letter b)에 의한 신청을 심사한 후, 국립 노동 조사국은 교육훈련을 허가받은 자연인 혹은 관련된 권한 기관에 의해 속행될 절차를 구속할 전문적 입장을 표명한다.

Article 29

근로자 대표기관의 감독 활동

노동조합과 기타 근로자 대표기관은 사용자의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분야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고유한 감독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Article 30

수권 규정

(1) 슬로바키아 공화국 노동부와 사회가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일반적인 규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

- a)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보장의 세부사항, 구체적인 근무활동의 수행과 구체적인 기술적 설비에 대한 전문적 자격요건의 세부사항
- b) 교육훈련 활동의 요건과 범위, 교육훈련 계획, 전술된 서류의 유지와 교육훈련 참여자의 지식의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
- c) 통제된 기술적 장비로서의 기술적 장비

(2) 슬로바키아 공화국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해 슬로바키아 공화국 노동

부와 사회가정부가 공포한 일반적인 규율은 법정 산업재해보고서 양식을 확립하여야 하며, 독립된 법률³⁶⁾에 의한 분류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슬로바키아 공화국 공중보건부에 의하여 공포된 일반적 규율을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산업 보건 사무 수행의 범위와 내용,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행부서의 구성과 그들의 전문적 자격요건의 세부사항
- b) 직업병과 그로 인한 위험의 보고, 등록, 기록의 방법

PART THREE

기술적 조사의 전환

Article 31

설립방법

(1) 통제된 기술 장비 및 기술 장비에 관련된 안전요건 충족여부의 검증을 위한 기관으로써, 최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 조사는 연계기관인 기술 조사국으로 전환된다.("연계기관")

(2)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계기관의 창설자는 슬로바키아 공화국 노동부, 사회가정부의 책임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연계기관과의 제휴각서와 제휴계약은 슬로바키아 공화국 노동부와 사회가정부의 인가 대상이 된다.

(3) 연계기관의 창설과 설립, 지위, 법적 관계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연계기관의 창설과 합병에 관하여 독립된 법령³⁷⁾이 적용되지 않는다.

Article 32

기탁의 문제

(1) 기술조사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공사는 연계기관 설립에 이용된다.

(2) 연계기관의 비금전적 기탁금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상법 Article 5와

36) 국가 통계에 관하여 Act No 540/2001 Coll. Article 19, paragraph 2.

37) 국유재산 이전의 조건에 관한 Act No 92/1991 Coll. 및 그 개정법률.

제59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업으로 간주되는 국가재정기관으로서의 기술조사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다. 책임의 전가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477조제3항과 제47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Article 33

비금전적 기탁금의 가치 평가

(1) 연계기관의 비금전적 기탁금의 가치는 연계기관의 창설일까지 관리되어 온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연계기관의 비금전적 기탁금의 가치는 그것이 등기된 자본에 기여한 가치와 창설일까지 적립되어 온 준비금 가치의 총계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다.

Article 34

소유권과 노동관계 및 다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이전

(1) 상업 등기부상의 연계기관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에는 연계기관 설립전의 비금전적 납입에 관한 서류가 수반되지 않는다.

(2) 비금전적 기탁금의 소유권은 연계기관의 설립일에 연계기관으로 이전된다. 연계기관의 설립일까지, 창설자는 비금전적 기탁금에 포함된 물건들을 양도하고 연계기관은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3) 비금전적 기탁금에 포함된 물건의 양도와 수령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법 제59조제2항, 제60조, 제483조에 따른 비금전적 기탁금의 가액의 지급 의무와 기탁금의 관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는 물론, 종료되지 않은 활동이나 법적 관계로부터 발생한 종료되지 않은 제3자 소송의 경우를 포함한 권리의무는 연계기관의 설립일에 연계기관으로 이전된다.

Article 35

경영의 문제

(1) 연계기관은 이 법 제14조의 기술적 장비의 안전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2) 연계기관은 상법에 규정된 조건하에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Article 36

등기된 자본, 준비금과 주식

(1) 연계기관의 설립과 함께 등기된 자본은 준비금을 제외한 비금전적 기탁금의 가액이다. 상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등기된 자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준비금은 연계기관 설립시에 기관의 소유가 되는 비금전적 기탁금의 5%를 의미한다.

(3) 연계기관의 주식은 등기된 주식이어야 하며, 주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형식이나 종류에 있어 다른 어떠한 변경도 허락되지 않는다.

Article 37

기술 조사 사무 담당기관의 존재는 연계기관의 설립일로부터 종료된다.

PART FOUR

공통적, 과도적, 최종적 규정

Article 38

(1) 사용자, 사용자가 아닌 기업인으로서 자연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와 다른 일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의무를 슬로바키아 기술 기준에 의해 확립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그러한 이행은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이행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근로자 안전 대표자, 계약에 기초하여 예방 및 보호 사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근로자, 주무관청의 근로자는 그들의 권한과 의무의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독립된 법률에 의한 영업상의 비밀을 포함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관련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기술 조사국”이라는 용어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보장에 관한 모든 법령 규정에서 “주무관청”이라는 용어로 적절히 대체되어야 한다.

Article 39

과도적 규정

(1)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술 조사국 연계기관은 제14조에 의한 기술장비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의 검증에 관한 주무관청으로 존속한다.

(2)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기술 조사국 연계기관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제23조제6항에 따라 안전 기술자가 전문적인 재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그의 안전 기술자 면허는 2007년 12월 31일로 효력을 상실한다.

(4) 200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안전 기술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연인은, 2006년 6월 30일까지 그가 Annex No. 1에 열거된 사용자의 활동에 있어 안전 기술자의 의무를 수행하여 왔고 제24조 제9항에 따른 전문적인 재훈련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마친 경우에, 제24조에 따른 시험 없이도 국립 노동 조사국에 의해 발급된 안전기사 면허의 권한에 따라 안전기사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5) 2006년 6월 30일까지 발급된 면허와 허가는 면허 또는 허가 소지자인 자연인이 제16조에 의한 전문적인 재훈련에 참여한 경우 제16조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면허 또는 허가는 2008년 4월 30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6) 2006년 6월 30일까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허가로서, 통제된 기술적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시험 및 수리, 가스 모터로 운행되는 운송수단의 가스탱크를 채우는 작업을 포함하여 가스 수송을 위하여 압력 용기에 가스를 채우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은 늦어도 2007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7) 교육훈련 면허는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 a)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2006년 8월 31일에
- b)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2006년 12월 31일에
- c)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2007년 4월 30일에
- d)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2007년 8월 31일에
- e)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2007년 12월 31일에
- f) 2003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2008년 4월 30일에

(8) 2006년 6월 30일까지 발급된 작업장의 안전 분야의 전문적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면허는 2006년 8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9)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노동 보호 분야의 자문 사무 제공에 관한 허가는 2006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Article 39a

최대 2008년 7월 30일까지 국립 노동 조사국에 제39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인 안전기사 면허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Article 40

이 법은 Annex No. 3에 규정한 EC와 EU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Article 41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관한 Act No. 330/1996 Coll.의 개정법률 Act No. 95/2000 Coll.은 Act No. 158/2001 Coll.와 Act No. 215/2004

Coll. 및 Act No. 479/2005 Coll.에 의해서 폐지된다.

2. 슬로바키아 노동 안전국과 슬로바키아 채광국 포고령 No. 483/1990 Coll.에 의하여 개정된, 작업 중의 상해와 산업재해 및 기술적 설비의 결함에 관한 슬로바키아 노동 안전국과 슬로바키아 채광국 포고령 No. 111/1975 (Digest).
3. 포고령 No. 31/1991 (Digest)에 의하여 개정된, 원자력 분야의 기술적 설비의 안전 보장에 관한 슬로바키아 노동 안전국 포고령 No. 66/1989 (Digest).

TITLE II ~ TITLE IV³⁸⁾

TITLE V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van Gaššparovi, s. m.

Pavol Hruššovský, s. m.

Mikulášš Dzurinda, s. m.

38) 이 부분은 다른 법령의 개정부분으로 생략함: 역주

**잠재적으로 근로자를 건강상의 심각한 손상에 노출시키거나
건강상의 빈번한 손상과 관련된 고도의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의 목록**

이 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제활동의 구분³⁹⁾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건강상의 손상을 입거나 건강상의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고도의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이 분류된다.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코드		제 목
구분	집단	
01		농작물의 재배와 낙농업, 사냥 및 관련 업무
02		임업과 벌채업
05		석탄과 갈탄 채굴
06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07		금속의 채굴
08		기타 채굴 및 채취
09		채굴 보조 활동
10		식량 생산
11		음료 생산
12		담배제품 생산
15		피혁 및 피혁 가공품 가공 및 생산
16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코르크 제품 가공 및 생산, 밀짚과 고리버들 제품 생산
17		제지 및 종이 제품 생산
	18.1	출판 및 출판 관련 업무
19		코르크 및 정유 제품 생산
20		화학약품 및 화학 제품 생산
21		기초 의약품 및 조제약 생산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23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24		레일 가공 및 생산
25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 건조물 생산

39) Decree of 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No 306/2007 Coll. 참조. 이를 통해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가 공표됨.

26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제품 생산
27		전기 장비 생산
28		다른 곳에 분류된 기계 및 장비 생산
29		전동기,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생산
30		다른 운송수단의 생산
31		가구 생산
32		기타의 생산
35		전기, 가스, 증기 및 냉방 공급
36		수자원의 취수, 처리, 공급
41		건설
42		건축공학
43		특수 건설업
49		육상 운송 및 수송관 운송
50		수자원 운송
52		창고업 및 운송 보조활동
53		우편 및 특송 업무
75		수의(獸醫)업무
86		건강관리
87		주거시설 관리
88		수용시설 없는 사회사업

근로자의 수에 따른 안전 기술자 또는 공인 안전기사의 최소 숫자

A.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코드가 Annex No. 1에 포함된 사용자의 경우 공인 안전기사 혹은 안전 기술자의 최소 숫자

근로자의 숫자	공인 안전기사 또는 안전 기술자의 숫자
400인 미만	최소 1인의 공인 안전기사
401인 이상 800인 미만	최소 2인의 공인 안전기사
801인 이상 1,200인 미만	최소 3인의 공인 안전기사 또는 최소 2인의 공인 안전기사와 1인의 안전 기술자
1,200 초과	최소 3인의 공인 안전기사 또는 최소 2인의 공인 안전기사와 1인의 안전 기술자와, 공인 안전기사와 안전 기술자 총수의 최소 3분의 2가 공인 안전기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수가 1,000인을 초과할 때마다 최소 1인의 추가적인 공인 안전기사 혹은 안전 기술자

B. 경제활동의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코드가 Annex No. 1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안전 기술자의 최소 숫자

근로자의 숫자	안전 기술자의 숫자
600인 미만	최소 1인의 안전 기술자
601인 이상 1,200인 미만	최소 2인의 안전 기술자
1,200인 초과	최소 2인의 안전 기술자와, 근로자의 수가 1,000인을 초과할 때마다 최소 1인의 추가적인 안전 기술자

노동 보호 분야의 교육훈련 면허 유형

Article 27, 제3항에 의하여 공인된 노동 조사기관과 공인된 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교육훈련 면허를 발급한다.

Group 01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및 확립된 근로 조건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1.1 근로자, 관리직 근로자

01.2 안전 기술자

01.3 안전 기술자와 공인 안전기사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용자

Group 02 높은 압력과 관련된 통제된 기술적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2.1 기술 조사관

02.2 기사

02.3 수리기사

Group 03 통제된 기중기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3.1 기술 조사관

03.2 기사

03.3 수리기사

03.4 적하 포장사

Group 04 가스와 관련된 통제된 기술적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4.1 기술 조사관

04.2 기사

04.3 수리기사

Group 05 전기와 관련된 통제된 기술적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5.1 전기기사, 독립 전기기사, 작동 및 가동 통제를 위한 전기기사

05.2 기술 조사관

Group 06 전동수레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6.1 전동수레를 조작하는 직원

Group 07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7.1 높은 곳의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07.2 지지대의 조립 및 제거 담당 직원

Group 08 건설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8.1 일정한 건설기계 및 설비의 기사

Group 09 농업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09.1 일정한 농업기계 및 장비의 기사

Group 10 임업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 그룹의 활동은 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10.1 일정한 임업기계 및 장비의 기사

10.2 목재의 별채를 위한 휴대용 전기톱 사용자

10.3 다른 활동을 위한 휴대용 전기톱 사용자

Act No. 124/2006 Coll.에 대한

Annex No. 3

준용되는 EC와 EU의 규정 목록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 의회 지침 89/391/EEC (OJ L 183,29.6.1989).